

구매거래 기본계약서

제1조(계약의목적)

본계약은 '갑'과 '을'이합의한제작규격(개별계약1)에따라(계약목적물)을제작및공급함에있어그 제반사항에관한 '갑'과 '을'간의권리, 의무및책임을규정함을그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본계약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 1. "계약목적물"이란본계약의주된목적으로써 '갑'과 '을'이합의하여제작및공급하기로한 물건등을말한다.
- 2. "제작규격"이란계약목적물을제작함에있어'갑'의수요에따라'갑'이정한계약목적물의 재료, 크기(사이즈), 제작방식등을말한다.
- 3. "목적물의인도" 란완성된목적물에대한단순한점유를 '을'에서 '갑'으로이전하는것만을 의미하는것이아니라, '갑'이본계약의목적물을검사한후그목적물이제작규격의내용대로완성되었음을명시적으로시인하는것까지포함하는것을말한다.
- 4. "개별계약서"란계약목적물의구체적인제작규격등을규정한내용으로 '갑'소정의양식에의 한납품통지서또는개별납품의뢰문서(발주서, 거래명세서등)를말한다.

제3조(기본계약)

- ① 본계약은 '갑'과 '을' 간의거래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며, 별도의서면계약이없는한 '갑'과 '을' 간의모든거래는본계약에규정된바에따른다.
- ② '갑'과 '을' 간의거래에있어서개별계약이체결되었을경우에도개별계약에서언급되지아니 한거래상의기본적인사항은본계약에규정된바에따른다.
- ③ '갑'과 '을' 간의거래에관한기본적인사항중본계약에규정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별도의 계약이없는한 '갑'과 '을'이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







제4조(개별계약의성립)

본계약에서예정하고있는 '갑'과'을' 간의개별계약은 '갑'이발급하는 '갑'소정양식의납품통지서또는개별납품의뢰문서등이 '을'에게도달함으로써성립한다.

제5조(계약의내용)

'갑'과 '을'은개별계약으로다음각호의내용을규정하고준수한다.

- 1. 계약목적물 :
- 2. 총계약금액:
- 3. 계약기간:
- 4. 계약목적물인도일(계약납기):
- 5. 납품장소 :
- 6. 하자보증기간:

제6조(대금지급방식)

'갑'은제5조의규정에따른계약금액을 (현금지급 or '갑'의대금지급기준)의조건으로 '을'에게 지불한다. 단, 본계약금액을어음으로지급할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7조(업체등록및출입)

'을'은본계약의체결일로부터10일이내에 '갑' 소정의협력업체등록절차에따라업체실태조사서 ('갑'소정의양식에의함), 사업자등록증, 기타'갑'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요구하는제반서류를'갑'에게제출함으로써업체등록을필하여야하며, 추후위등록사항증변경사항이발생할경우에'을'은해당변경사항발생일로부터20일이내에문서로서'갑'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단, '갑'은 '을'의정보를본계약의목적이외사용하지않으며, 제3자에게공개또는누설하지아니한다.

제8조(견본품제출)

'을'은각개별계약시인도에앞서'갑'이요구하는바에따라'갑'에게견본품, 견본품성적서, 보증 및기타필요한자료를제출하여야하고,'갑'으로부터품질승인을얻어야한다.

제9조(제작절차)

① '을'은 '갑'이제시한제작규격에따라계약목적물을제작한다. 단, '을'은 '갑'이인정 할수있는정당한이유가있을시본제작규격에관하여 '갑'과협의할수있다.



- ② '을'은계약목적물제작에소요되는자재를제작규격에만족되는것을사용하여야한다.
- ③ 본계약목적물의구체적인제작규격은개별계약으로체결한다.

제10조 (보증의무)

- ① '을'은 위탁받은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조 공정에서부터 완료후 납품 시점까지 '갑'이 요구하는 사양, 품질 및 신뢰성 만족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 보증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갑'이 요구하는 품질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품질계획의 수립, 측정체계유지, 운영, 통계적 공정관리, 검사 및 시험결과의 보관, 품질문제 개선대책 수립 및 현장 FEED BACK 등 품질보증 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 못해 '갑'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품질적 악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미칠 우려가 있을것으로 판단될 경우 '갑'은 이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해 '갑'이 취하는 모든 적법한 제재조치에 대해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11조(공정변경의 사전신고 및 승인)



'을'은 '갑'의 계약목적물을 제조함에 있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공정,제조설비, 사용재료, 시험규격 및 기준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갑'에게서면 통보하여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적용해야 한다. 단, 사전승인을 받지 못하고 발생한 제반문제는 전적으로 '을'이 책임진다.

제12조 (품질손실 비용의 보상)

'을'이 '갑'에게 납품한 부품의 품질문제로 인해 '갑'의 공정, 품질 및 제품 책임에 문제를 야기시킨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3조 (제조물책임)

- ① '을'은 '갑'이 발주한 계약목적물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갑'에게 납품 하여야 한다.
- ② '을'이 납품한 물품 등에 대하여 '갑' 또는 '갑'의 고객사에게 제3자로부터 제조물 책임에 대한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을'은 자기의 비용으로 동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으로부터 '갑' 또는 '갑'의 고객사를 방어하여야 한다.
- ③ '갑' 또는 '갑'의 고객사는 자기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책임으로 인하여 위 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배상을 한 경우에는 '을'은 동 배상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과 '을'은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의 발생 방지·방어 및 대책 수립에 상호적극 협조한다.

제14조(납기)

① 납기결정

'갑'은 가 비결계약체결시자신의고유한사정에따라합리적인범위내에서임의로계약목적물의납기를정할수있다. 이에대하여 '을'은정당한사유로당해개별계약서상의납기를준수할수없을경우에당해개별계약서를교부받은날로부터익일영업일이내에 '갑'에게서면으로이의를제기해야한다. 이경우 '갑'과 '을'은상호협의에의하여새로운납기를결정할수있다. 만일 '을'이당해개별계약서를교부받은날의익일영업일이내에 '을'의서면에의한이의가 '갑'에게도달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을'은위납기에동의한것으로본다.

② 납기통지

'갑'은세부적납기가기재된납품통지서또는납품의뢰문서를 '을'에게교부함으로써발주서상의납 기기재를대신할수있다.

③ 납기회신

'을'은발주서를교부받은날의익일영업일이내에해당물품의재고유무점검또는생산계획수립등을통해 납품이가능한날을판단하여 '갑'의 SCM 사이트에로그인후납품예정일을등록하여야한다. 이후납품 이완료될때까지매주 1회납품예정일을등록하여야하며, 납품예정일이변경되는경우마다즉시수정된납 품예정일을추가등록하여야한다. SCM 사이트주소및아이디와비밀번호는 '갑'으로부터제공받는다. 단, '갑'이 SCM 주소및아이디와비밀번호를 '을'에게교부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본조①항의규정을준용한다.

④ 납품지원

'갑'은 '을'의납품에있어가격, 품질, 납기준수및기타협력사항등에대하여특별한하자가없는한 '을'의계속적인납품을위하여적극지원하기로한다.

제15조 (단가조정)

'을'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수급사업자인 경우,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단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부품의 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인 원재료 (화학 적, 물리적 변화를 거쳐 제품이 되는 기본소재를 말한다) 가격이 20% 이상 변동되어 단가



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을'은 '갑'에게 단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가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호의 신청을 받은 당사자는 위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단가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위 신청을 받은 당사자가 단가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단가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2차 VENDOR에 대한 대금지급)

- ① '을'은 '갑'의 계약목적물 가공, 조립 등을 위해 '을'의 수급사업자(이하 '2차 VENDOR'라 칭함)로부터 '갑'의 계약목적물 일부를 제조 위탁할 경우 '을'은 정기적으로 2차 VENDOR에 대한 제반 현황을 관리 해야 하며 '갑'이 요청할 경우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2차 VENDOR에게 본 계약목적물의 일부를 제조 위탁할 경우에는 본 계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을'은 전 항의 2차 VENDOR가 중소기업인 경우 납품된 물품대금의 지급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정한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그에 준하여지급해야 한다.

제17조 (제3자의 손해)

- ① '을'은 그가 제조, 가공, 수리한 계약목적물과 관련하여 제3자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손해를 입었거나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을'은 자기 책임과 비용 부담하에 그 일체를 처리, 해결해야 한다.
- ② 계약목적물에 대한 '을'의 귀책사유로 사외 CLAIM 및 서비스 CLAIM이 있는 경우 이들 CLAIM의 해결을 위한 일체의 비용과 책임은 '을'이 부담해야 한다.

제18조 (인도)

① 인도절차및완료

'을'은 '갑'소정의인도절차에따라개별계약서에기재된계약목적물을납품하여야한다. '갑'은 '을'의인도즉시수량, 품목등에대한확인절차를진행하며, 당해확인절차종료후 '을'은 '갑'으로 부터소정의인도확인서류를교부받아야한다. 본서류를교부받음으로써인도가완료된것으로한다.







② 인도장소

'을'은개별계약서에기재된인도장소에납품하여야하며, 인도장소까지의포장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및기타제반경비는 '을'의부담으로한다. 이는 '갑'의긴급요청에따른인도시에도동일하나긴급요청으로인하여추가된비용은 '갑'이부담한다.

제19조(검수)

- ① '갑'과 '을'은상호협의하여계약만료이전에계약목적물의검수예정일을결정할수있으며, '갑'은 '을'의검수요청이있을시지체없이이에응해야한다.
- ② '갑'은 '을'의요청에따라계약목적물의검수를실시하되, 검수또는재검수를위해필요한일 체의제반비용은 '을'이부담한다.
- ③ '갑'은필요에따라계약목적물의제작규격에관한중도검사를실시할수있으며 '을'은이에성 실히응해야한다.
- ④ '갑'은검수시, 본계약내용대로제작되었는지를객관적으로평가해야하며최종검수에합격하면 '갑'은검수확인서를 '을'에게교부한다.
- (5) '을' 은전항의검수에합격하지못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대체또는보수하여다시검수를받아야 하며, 이로인해계약기간을준수하지못하게된경우에도 '을'은 '갑'에게납품지연에따른 책임감면을주장하지못한다.
- (6) '을'은 '갑'의검수에이의가있을때에는 '갑'에대하여재검수를요구할수있으며, 재검수의요청이있을시, '갑'은지체없이재검수를실시한다. 단, 동이의제기를이유로계약기간을연장할수는없다.

제20조 (불합격품의 처리)

- ① '갑'의 검수결과 불합격품에 대하여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의 비용 부 단으로 즉시 인수하고, '갑'이 요구하는 지정 납기일까지 이의 대체품을 납품하거나 보 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을'은 본래의 납기에 대한 책임을 면 하지 못한다.
- ② '을'은 검수결과 불합격된 계약목적물을 '갑'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인수하여야 한다.
 '을'이 이에 위반한 경우 '갑'은 이 불합격품을 '을'에게 반송 할 수 있으며, 반송에 필요한 일체의 책임과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 ③ '갑'이 불합격품을 보관하는 동안 '갑'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불합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 또는 변질한 경우 그 손실은 '을'이 부담한다.

제21조 (부족수량 및 불량물품의 납입과 과다납품의 처리)



- ① '을'은 검수결과 수량부족 또는 하자로 인한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부족수량을 보충하거나 하자있는 불합격품의 대체품을 '갑'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단, '갑'의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 ② '갑'은 제조 위탁물품의 과다납품의 처리에 관해서는 제15조 불합격품의 처리와 동일하 게 처리키로 한다.

제22조 (서비스 자재의 공급)

- ① '을'은 '갑'의 서비스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자재에 대해 정부가 정한 법적 의무 공급 기간까지 서비스 자재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비스 자재의 단가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을'이 공급한 자재 중에서 정부가 정한 제품 무상 보증 기간 이내에 불량을 유발시킨 경우 '을'은 '갑'에게 즉시 보상(물품교체, 현금 등)해야 한다.
- ③ '을'이 서비스 자재의 공급을 지연시키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소유권)

- ① '갑'이 '을'에게 제공한 지급품 또는 대여품과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근거로 제조 가 공된사양품, 또는 기타 물건의 소유권은 '을'이 지급품 또는 대여품 대금의 지불을 완 료할 때까지 '갑'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 ② '을'은 지급품 및 대여품에 대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처분이나 기타 일반 체권자 로부터 강제 집행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품 및 대여품이 '갑'의 소유임을 밝혀서 해당 강제집행 등의 목적물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위의 사실 및 경위를 즉시 '갑'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지급품 및 대여품의 취급)

- ① '을'은 지급품 또는 대여품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갑'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소정의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 '을'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1. 대여품 또는 무상지급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 2. 특별히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 3. 대여기간이 완료된 경우





4.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25조(계약목적물의표기및포장)

'을'은 '갑'에게인도하는계약목적물의표기및포장상태에관하여다음각호의규정을준수한다.

- 1. 계약목적물의포장상태는 '갑' 이요구하는소정의용기및용량에따른다.
- 2. 계약목적물의포장표면에는물품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등을표시하거나또는동사항이 명기된표참을별도인쇄하여부착한다.
- '갑' 은상기1,2호에따르지않은계약목적물에대하여납입을거부할수있으며, 이로인하여
 '갑'에게손해가발생하는경우 '을' 은이에대하여책임을진다.

제26조(실사및지도)

'갑'은계약목적물의품질및공정관리등을위하여 '을'의공정설비, 생산관리, 품질보증및재무상태 등실태를수시조사할수있고, 작업현장에출장하여이를확인하고검사할수있으며, 이들에관련된자료의 제출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 '을'은이를거부할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27조(업체평가)

- ① '갑'은 '을'과의거래관계에있어정부및유관기관에서실시하는업체평가제도혹은 '갑'의 소정평가기준에의해 '을'을평가하여등급을매길수있다.
- ② '갑'은위평가등급에따라합리적인조치로서개발발주, 납품발주및부품대금지급등에서 '을'에대해우대조치혹은제재조치를취할수있다.

제28조(계약이행보증및하자보증)



- ① '을'은본계약의이행보증을위하여이행(선급금)보증보험에가입하고보험증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 ② '을'은계약목적물인도완료시점부터15개월간(이하 '하자보증기간'이라한다.)계약목적 물에대하여추가대금없이하자보증을한다.
- ③ 하자보증기간중본계약목적물의정상적인운영에문제점이발생할경우, '을'은자신의책임과 비용으로이를교체하거나수리하여야한다. 단, 합리적수준의기능추가및개선의경우추후협의 를통하여지원한다.
- ④ '을'의사전동의없이 '을'이지정하지않은사람이계약목적물의개조, 변경등을행한결과문제가발생하는경우, '을'은이의조속한해결을위하여필요한지원을제공하되이와관련된제반비용에대해서는 '갑'과 '을'이별도의협의를통하여결정한다.
- ⑤ 하자보증기간경과이후의계약목적물의유지, 보수에관해서는 '갑'과 '을'이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을'은하자보증의무를보증하기위하여하자보증기간만료시까지를기간으로하는총계약금액의10%에해당하는금액의하자보증증권을 '갑'에게교부한다.

제29조(계약의변경)

- '갑'의귀책사유로인해본계약및개별계약의내용을변경또는일시중지해야할경우, '갑'은
 '을'에게서면으로이를요청해야하며, '갑'과 '을'은협의를통해본계약및개별계약의내용을변경또는일시중지할수있다.
- ② 천재지변혹은 '을'의귀책사유가아닌불가항력으로인하여계약기간내에제작을완료할수없을 때에는 '을'은지체없이그사유를 '갑'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하며, '갑'과 '을'은협 의를통해계약기간을변경할수있다.
- ③ '을'은계약목적물의사양변경, 설계변경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반드시사전에 '갑'에게서 면으로협의요청하여야하며, '갑'과협의하지아니하고사양변경, 임의설계변경등을하는경 우에는이로인하여 '갑'에게발생한일체의손해를배상하여야하며, 계약해지등 '갑'의일체 의처분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지않음을확인한다.

제30조(계약의해제또는해지, 손해배상책임)



- ① '갑'과 '을'이본계약에따른의무를위반하는경우에상대방은위반당사자에대하여상당한기 간을정하여그의무의이행또는위반사항의시정을최고하고, 동최고기간내에상대방이위반사유 를시정하지아니할경우에는즉시본계약을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 ② 다음각호의경우, '갑'은 '을'에게별도의최고없이본계약을즉시본계약을해제또는해지할 수있다.
 - 1. '을' 이 '갑' 에게중대한손해나위해를끼친경우
 - 2. '을' 이감독관청으로부터영업취소, 정지등의처분을받을경우
 - 3. '을'이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기타강제집행을당하여계약이행이곤란하다고판 단되는경우
 - 4. 파산절차또는회생절차가개시되거나이러한신청이있는경우
 - 5. 재해또는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해 '을'이본계약을이행하기가현저히곤란하다고 '갑' 이판단하는경우
- ③ '갑' 또는 '을'의귀책사유로인하여본계약이해제또는해지된경우, 유책당사자는상대방에 게그로인하여발생하는일체의손해에대하여배상하여야한다.

제31조(지체보상금)





- ① '을'은정당한사유없이개별계약납기를지연하였을경우,지연일수에대하여1일당계약금액의 3/1000에해당하는금액을지체보상금을 '갑'에게지급하여야하며, '갑'은동지체보상금을 대금지급시공제할수있다. 단,지체보상금의총액은총계약금액의10%를넘을수없다.
- ② '을'은정당한사유없이개별계약납기를지연하였을경우, 전항의지체보상금외에별도로 '갑'에게발생한일체의영업상의손해를배상하여야하며, 당해납기지연으로인하여 '갑'이제3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여야할경우에는그로인한모든책임을부담하여야한다.

제32조(비밀유지및판매금지)

- ① '을'은 '갑'의모든정보(경영, 기술, 자료, 지식, KNOW-HOW 등)를비밀로취급하여야하며, '갑'의사전서면동의없이기술정보를계약이행의목적이외에이용할수없으며제3자에게열람또 는누설하여서도안된다.
- ② '갑'의제작규격에따라제작, 공급한계약목적물의경우, '을'은 '갑'의사전서면동의없이임의로이를제3자에게제작, 공급및판매할수없다.
- ③ 본조항은 '을'의종업원, 퇴직자및하도급업자에게도적용되며본조의위반으로인해발생되는 '갑'의모든손해를 '을'이배상하여야한다.
- ④ 계약만료, 계약의해지(해제) 또는 '갑'의요구가있을시 '갑'이제공한모든기술정보와그복 사물, 생산물일체를지체없이 '갑'에게반환하여야한다.
- ⑤ '을'은어떠한경우에도 '갑'의서면동의가없는한 '갑'의자료를이용한제품이나반제품 등을제3자에게공급할수없다는점을명시적으로확인하며, '갑'의서면동의를얻어제3자에게 공급하는경우에도 '갑'에게공급하는공급단가보다낮은가격으로공급할수없으며, '갑'과 '을' 사이의공급단가에대한정보를어떠한형식을통하여서도제3자에게공개하거나제공할수 없다.
- ⑥ 본규정, 비밀유지의무는계약의종료또는만료시점이후에도3년간지속한다.
- ② '을' 이본조를위반하는경우에는 '갑' 에게위약벌로금 5억원을지급하여야하고, 그외에'갑' 이입게되는모든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제33조(지적재산권)

- ① '을'은계약목적물이제3자의특허등지적재산권을침해하지않음을보증한다.
- ② '갑' 또는 '갑'의고객사가계약목적물사용과관련한행위가제3자의지적재산권을침해했다는 주장을근거로당해제3자가소송및클레임을제기하거나제기할우려가있는경우, '갑'은즉시이를 '을'에게동사실을통보하고 '을'은자신의책임과비용으로이를해결하며, 동소송또는 분쟁으로 '갑' 또는 '갑'의 고객사가입게되는모든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 ③ 본계약에의해 '을'이 '갑'에게공급한계약목적물과계약이행시산출되는프로그램과그노하





우등일체의지적재산권(특허권, 저작권및판권포함)은 '갑'의소유로한다.

제34조(양도금지)

- ① '갑'과 '을'은상대방의사전서면동의없이본계약상의권리의전부또는일부를제3자에게양도, 증여, 대물변제, 대여하거나담보로서제공할수없으며, 본계약상의의무의일부또는전부를제3 자로하여금이행하게할수없다.
- ② '갑'에게사전에서면동의를얻어권리나의무의일부또는전부를제3자에게양도한경우라할지라 도계약목적물에대한모든하자에대하여'을'은제3자와연대하여보증한다.

제35조(불가항력)

당사자일방이본계약체결후관련법령의개폐, 천재지변, 화재, 폭발, 전쟁, 정부의조치, 국제분쟁기 타그통제범위를벗어난불가항력으로인하여계약을이행하지못할경우해당당사자는동불가항력사유가지 속되는한이로인한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

제36조 (부정방지의 의무)

- ① '갑'과 '을'은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의 이익만을 위하여 불건전한 상거래 행위(금전수수,리베이트, 커미션수수 등) 또는 통상적인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② '갑'과 '을'의 종업원중에서 공정한 거래관계 유지에 역행되는 행위를 한 자는 '갑'과 '을'어느쪽에서도 고용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갑'과 '을'은 상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37조(계약의일부무효)

본계약의내용의일부가관계법령이나판결에의하여무효가되더라도, 나머지계약내용은그효력을상실하지않는다.

제38조(분쟁의해결)

- ① 본계약과관련하여양당사자간의분쟁이발생할경우원칙적으로 '갑'과 '을'상호간의협의와 조정을통한합의에의하여해결하는것으로한다.
- ② 상호합의에의하여해결되지않는경우, 본계약의합의관할법원을 '갑'의관할지역법원으로한다.

제39조(계약의연장)





본계약서의계약기간은본계약서제5조 3호의규정에따르며,계약만료1개월전까지당사자일방의서면에 의한계약갱신거절의사가상대방에게도달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계약 금액 등 '갑'이 변경을 희망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동일한조건으로1년씩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

양당사자는본계약의체결사실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계약서2 부를작성하고양당사자가각각기명날 인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

계약자(갑):주식회사원익 아이피에스계약자(을): 진부터

주소: 경기도 형택지 진위면 청호리 332-1주소: 수당 WY 아제는 (0/6-2 기대자이벤 / 504 대표자: 가 등인 남짜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332-1 남짜: 20/2, 06. 18

제 조 반도체장비